

지식재산권 용어사전

공동저작자의 지위 [저작권]

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가지는 저작자의 지위.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, 권리보호기간은 최후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시로부터 기간.

공동저작물 [저작권]

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.(저작권법 제2조 제13호)

공동심판 [지재권일반]

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, 각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.

공동소유자 [법일반]

어떤 권리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광의의 공유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함.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주체가 되는 사람.

공동소송인 [법일반]

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을 공동소송인이라 함.

공동소송 [지재권일반]

원고 또는 피고의 한쪽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 소송당사자인 소송. 1인 이상의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 또는 1인 이상의 피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반 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이 있음.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의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